#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기관의장
람	



제 608호 2018. 5. 31.(목)

고 시	
제2018 - 69호	· 둔촌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 1
제2018 - 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공 고	
제2018 - 603호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7
제2018 - 604호	2018/2019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8
제2018 - 643호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cdots$ $10$
제2018 - 656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cdots 15$
게2018 — 657동	나체구 노심어하이스 기의 ス레 이보게저ス레야 이버세고 21

-1 -1					
회 람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8 - 69호

# 둔촌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둔촌 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둔촌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 2. 사업의 목적 : 취약한 마을의 기초인프라 정비 및 마을경관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향상
- 3. 사 업 비 : 2.087백만원(국비 1.561백만원, 지방비 488백만원, 자부담 38백만원)
- 4. 주요사업내용
  - 주택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빈집철거, 주택수리, 재래식 화장실 철거
  - 경관시설 정비 : 마을 안내판 설치
  - 기반시설정비 : 상·하수도 정비, 재해방지시설
  - 생활·위생·안전 등 인프라 계획 : CCTV 설치, 공동화장실 및 간이판매시설, 공 동쓰레기 집하장. 수세식 화장실 신설 및 정화조 신설

5.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6월	5.	사업기	감	:	2015년	~	2018년	6월
----------------------------	----	-----	---	---	-------	---	-------	----

6.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시행계획서는 남해군 미래전략사업단(055-860-360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결과(요약)

### 1. 총 괄

(단위:백만원)

시군	지구명 (마을명)	시행계획 수립일	총사업비	′15	′16	17
남해군	둔촌마을	_	2,087	_	100	1,987

## 2. 마을별(지구별)

·										
사업명	농어촌 취약지역	중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명	둔촌마을	위 치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둔촌	마을 일원					
기본계획수립일	2015.06	사업기간	3년	사업시행자	남해군수					
마을현황	인구 및 가구수 기초생활수급지 불량도로(4m미미 노후주택비율:	· 수 : 6 고 만 접도주택	59가구 1령자수(65세 이 1)비율 : 65% 건	상) :59 상·하수도 보급·	률: 0%					
사업비			2,087,816천원 쟈비 488,000 자	람 38,816 고방	비취 0					
\\[\(\frac{1}{2}\) \\\\\\\\\\\\\\\\\\\\\\\\\\\\\\\\\\\			2,087,244천원 자비 48,000 자	담 33,244 <i>지</i> 방비	<b>취</b> 0					
사업내용	• 경관계획 : ㅁ • 기반시설정비	재래식회 가을안내판 : 상·하수: ! 등 인프라	트 철거, 지붕개링 화장실 철거 도신설, 재해방지 · 계획 : CCTV설치 분리수거 관 리모델링	시설	]하장 및					
연계사업	• 사업비 : 47, • 사업량 : 18년 • 사업내용 : 설	670천원 동 글레이트 지	붕 철거 지원(혹	환경부)						
추진일정	•세 부 설 계 •시행계획수립 •발 주 •공 사 착 수 •공사완공 예정	: 2016.1 : 2016.1 - : 2016.1 : 2017.0 ! : 2018.0	1.30. 2.09. 2.14. 1.06. 5.31.							
특이사항	상습침수지역(2	2011, 2012	2 - 주택 24동 :	침수)						
연락처	시군 : 미래전력 위원장 : 최유병 전문가 : 김병철	<u> </u>	010-424	0-3603 48-4824 50-6649						

\* 서식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사용

#### (4) 제 608 호

## 3. 공종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m, 천원)

	(인기·개호, III, 신천)								
부문별	공종	기논	<del>'</del> 계획	현행기	계획(A)	변경기	계획(B)	증감	(B-A)
TLE	0 0	물량	금액	물량	증 (급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슬레이트 지붕개량	38	125	51	237	55	250	4	13
	■슬레이트 지붕철거	20	5	_	ı	_	-	-	-
주택정비	■빈집 철거	4	2	7	21	7	21	-	_
	■주택수리	13	52	7	24	7	23	_	Δ1
	■재래식화장실 철거	32	26	32	35	32	35	_	-
	■마을 담장정비	1	15	278	17	329	26	51	9
경관 시설정비	■건물철거 지원	5	5						
	■마을안내판			1	2	1	2	ı	-
기반	■하수도 신설	1	891	804.7	802	804.7	822	_	20
시설정비	■재해방지시설	1	500	806.5	463	806.5	486	ı	23
	■CCTV	3	15	4	23	4	23	_	_
	■마을버스정류장	1	20						
생활, 위생 <b>안전등</b> 인프라계획	■공동화장실 간이판매시설	1	77	_	1	_	-	1	_
	■공동쓰레기 잡히장 및 농산물 잡히장	1	16	1	23	1	32	1	9
	■수세식회장실 및 정화조 신설	11	44	13	87	13	87	ı	-
공공이용 시설계획	■마을회관 리모델링	1	50	1	27	1	27	_	-
소프트웨어	■주민역량강화	1	15	1	7	1	7	-	-
	■실시설계비	1	64	1	57	1	57	_	-
제경비	■공사감리비	1	144	1	133	1	133	-	_
ଆଟମ	■사업관리비	1	28	1	27	1	27	_	-
	■노후건축물진단	1	10	1	9	1	9	-	-
기타	■잡지출 및 예비비	_	_	1	94	1	20	-	Δ74

\* 공종은 마을별로 특징에 맟게 조정

## 4. 둔촌마을 사업비 수지 예산서

수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승인액	변경 승인액	증 감	비고
계	2,088	2087	-1	
■ 보 조	2,049	2,049	_	
- 국 고	1,561	1,561	_	
- 지방비	488	488	_	
■ 자부담	39	38	-1	
■ 융 자	_	_	_	
■ 환경부 등	_	-	_	

□ 지 출

(단위: 백만원)

기 승인액 변경 등											<u>단위</u>		<u>반원)</u>
부문별	공 종			1				승인액			증	감	
122		합계	뀖	재배	자부담	합계	뀖	재배	자부담	합계	국비	재배	자부담
	합 계	2,088	1,561	488	39	2,087	1,561	488	38	-1	0	0	-1
	소 계	317	219	59	39	329	229	62	38	12	10	3	-1
	■ 슬레이트 지붕개량	237	166	40	31	250	176	43	31	13	10	3	0
주 택 정 법	■ 슬레이트 철거	0	0	0	0	0	0	0	0	0	0	0	0
7 4 9 0	■ 빈집 철거	21	15	6	0	21	15	6	0	0	0	0	0
	■ 집수리	24	12	4	8	23	12	4	7	-1	0	0	-1
	■ 재래식회장실 철거	35	26	9	0	35	26	9	0	0	0	0	0
	소 계	19	14	5	0	28	21	7	0	9	7	2	0
경 관		17	12	5	0	26	19	7	0	9	7	2	0
시 설 정 법	■ 마을앤내판 설치	2	2	0	0	2	2	0	0	0	0	0	0
J Ł	소 계	1,265	962	303	0	1,308	997	311	0	43	35	8	0
시설정 <sup>법</sup>	·I	802	610	192	0	822	627	195	0	20	17	3	0
NEGU	■ 하수도 신설 ■ 재해방지시설	463	352	111	0	486	370	116	0	23	18	5	0
	소 계	133	100	33	0	142	107	35	0	9	7	2	0
생활위생 인전등	■ CCTV	23	17	6	0	23	17	6	0	0	0	0	0
인프라계획	<b>│</b> ■ 공운화상질 및 간이판배시절	0	0	0	0	0	0	0	0	0	0	0	0
	■ 997011 GOO S 972 GOO	23	17	6	0	32	24	8	0	9	7	2	0
	■ 수세식 회장실 신설	87	66	21	0	87	66	21	0	0	0	0	0
공공이용	소계	27	20	7	0	27	20	7	0	0	0	0	0
시 설 계 획	■ 마을회관리모델링	27	20	7	0	27	20	7	0	0	0	0	0
소프트웨 0	소계	7	5	2	0	7	5	2	0	0	0	0	0
	■ 수민역당강화	7	5	2	0	7	5	2	0	0	0	0	0
	소 계	320	241	79	0	246	182	64	0	<del>-</del> 74	-59	-15	0
	■ 실시설계비	57	43	14	0	57	43	14	0	0	0	0	0
	■ 공사감비	133	101	32	0	133	101	32	0	0	0	0	0
제 경 법	■ 시업관리비	27	20	7	0	27	20	7	0	0	0	0	0
	■ 노후건축물진단	9	6	3	0	9	6	3	0	0	0	0	0
	■ 잡지출	0	0	0	0	2	2	0	0	2	2	0	0
		94	71	23	0	18	10	8	0	-76	-61	-15	0

남해군 고시 제2018 - 71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3일

###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서상천)

2.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

3. 주 소 : 경상남도 하동군 송림1길 12

4. 점용목적 : 배수암거 교환 설치

5. 점용위치 : 남해군 서면 대정리 699

6. 점용면적 : 15 m²

7. 점용기간 : 2018. 5. 23. ~ 2018. 6. 30.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8 - 603호

##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 남 해 군 수

####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m21112	어업의종류	ALVID	그 어장 면허 면치기가		어 업	, ul –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양식물 어장 면적 면접 위치 (m²)	면허기간	주 소	성 명	비고	
남해양식 제504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000	2018.05.23 2028.05.22 (10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진목어촌계	재개발

#### ○ 양식어업권 포기신고 수리사항

=1-1-1	어업의종류	어업의종류 양식물 어장 면허 어어바버) 양식물 의치 면적 면허기건		-l-l-l-l	어 업	-2]-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위치	면석 (m²)	면허기간	주 소	성 명	비고
남해양식 제102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000	2008.05.23 2018.05.22 (10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진목어촌계	재개발

남해군 공고 제2018 - 604호

## 2018/2019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승인된 2018/2019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산업법시행령 제2조 제7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 남 해 군 수

□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 내역

#### 【 양식어업 】

○ 재 개 발

시 군	어업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위치	신청 면적	승인여부	도면 번호
소계				7건	45.36ha		
남해군	어류등 양식	축제식	새우	고현 갈화	7.0	승 인	3
"	어류등 양식	축제식	새우	고현 갈화	14.36	승 인	4
"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남해 입현	4.0	승 인	5
u	패류양식	살포식	피조개	창선 광천	5.0	승 인	6
"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	승 인	7
"	패류양식	살포식	u	이동 초음	5.0	승 인	8
u .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	승 인	9

## 【 마을어업 】

○ 재 개 발

시 군	어업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수면위치	신청면적	숭인여부	도면 번호
소계				6건	550.4		
남해군	마을어업	바닥식	패류 <i>,</i> 해조류 등	남해 심천	83.1	승 인	10
"	마을어업	바닥식	패류 <i>,</i> 해조류 등	설천 금음	154.5	승 인	11
u	마을어업	바닥식	패류, 해 <u>조</u> 류 등	창선 적량	69.1	승 인	12
u u	마을어업	바닥식	패류 <i>,</i> 해조류 등	삼동 영지	46.3	승 인	13
u u	마을어업	바닥식	패류 <i>,</i> 해조류 등	창선 서대	111.5	승 인	14
u u	마을어업	바닥식	패류 <i>,</i> 해조류 등	창선 보천	55.0	승 인	15
"	마을어업	바닥식	패류 <i>,</i> 해조류 등	창선 율도	13.5	승 인	16
"	마을어업	바닥식	패류 <i>,</i> 해조류 등	창선 대곡	17.4	승 인	17

### 【정치망】

○ 대체개발

시 군	어업명칭	어업종류	양식물	수면위치	신청면적	숭인여부	도면 번호
				1건	12.675		
남해군	정치망	정치망	멸치외	상주 앙아	12.675	조건부 승인 (정치망 보호구역 관계 법령 준수 처분)	1

남해군 공고 제2018 - 643호

#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림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및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제1항 단서 에 따라
  - 운영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별표 2]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조정

-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6월 2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⑤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

2) 연락처 : 전화 055-860-3604, 팩스 055-860-3750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 미래전략팀(055-860-3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성명(명칭)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기는기 바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u></u> 견
\\\\\\\\\\\\\\\\\\\\\\\\\\\\\\\\\\\\\\	াটি পাঁচ	찬성	반대		7	신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 1. 이용료

구 분	대학생 이하	일 비수기	반 성수기	비고
게스트룸 2인실				
및 4인실 게스트룸 12인실	15,000	20,000	25,000	(단위: 원)
및 14인실				

- 성수기 : 7월~8월, 공휴일 및 공휴일전일
- 1인 1박 기준
- 가족동반 만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 1박은 당일 14:00∼익일 12:00까지

남해군 공고 제2018 - 656호

#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2. 개정이유

농어촌마을의 농어업인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시 재정상태가 열악한 마을회의 과다한 자부담 사업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마을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비율 및 지원근거를 수정 신설하고, 농어업인의 농업경영 및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월급제 도입에 따른 농어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어항법」에서 어촌의 용어의 정의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의 어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어 상위법령 명칭을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수정 (안 제2조)
  - 나. 마을회의 농어업인 공동이용시설에 지원 비율 및 근거 등 수정 신설(안 제7조)
    - 제1항 군내 농어업· 농어촌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군내 농어 업·농어촌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 제1항 제3호에 농어촌마을의 농어업용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제2항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생산자단체"를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생산자단체, <u>농어촌마을회</u>"로 수정
- 다. 농어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신설(안 제8조)
  - 농어업인 월급제 도입에 따른 제8조 제9호로 **농어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 라. [별표] 단체별 지원내용에 축산 및 양봉관련 단체 추가 신설(안 제12조)
  - 축산.낙농 및 양봉관련 단체의 지원내용 누락에 따른 (사)전국한우협회 남해군 지부, 남해낙우회, 양봉협회남해군지부의 축산·낙농, 양봉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 축산 및 양봉기술 벤치마킹, 판매 홍보, 각종 행사참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6월 2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제출처

- 1) 주 소 :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06, 팩스 055-860-3981
-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055-860 -39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성명(	명칭)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ગો. <b>ગો</b> મે			찬성여부			의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	반대		7	· 선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어촌·어항법」제2조제1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제1항 제3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마을의 농어업용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조제8호와 제10호, 제11호에 따른 자로"를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2조 제8호, 제10호, 제11호에 따른 자와 제9호에 따른 마을회로" 한다.

제8조 제8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어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12조 제5항 "[별표] 단체별 지원 내용(제12조 관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체 명	지원내용	담당부서
(사)전국한우협회남해군지부, 남해낙우회	축산, 낙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 내외 선진 축산.낙농 기술 벤치마킹, 판매홍보, 각종 행사참가	축산정책팀
양봉협회남해군지부	양봉산업 경쟁력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 내외 선진 양봉 기술 벤치마킹, 판매홍보, 각 종 행사참가	축산정책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뜻)<본문 생략>	제2조(용어의 뜻)<현행과 같음>					
1.~5.<생 릴	<b>‡</b> >		1.~5.<현형	생과 같음>			
6 「어결	는·어항법」제2조제1 <u>년</u>	<u>₹</u>	6 <u></u>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	<u> 6ই</u>			
7.~11.<생 택	<b>详&gt;</b>		7.~11.<현학	행과 같음>			
제7조(지원 범위)(	D		제7조(지원 범위	)①			
	<u>t</u>	<u> 1음 각 호의</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u> 어느</u> 하니	나에 해당하는 경우	<u>-에 사업비</u>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	<u> </u>	를 예산의	의 범위 내에서 일 <sup>.</sup>	<u>부 또는 전</u>		
			<u>액 지원할 수 있다.</u>				
1.~2.<생 팀	<b>毕</b> >		1.~2.<현행과 같음>				
3. <u>&lt;신 설&gt;</u>			3. 농어촌마을의 농어업용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u>3.</u> <생 략>			<u>4.</u> <현행과	같음>			
2	세2조제8호와 제10호, 제	11호에 따른	②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u> 자로</u>	<b></b>			호, 제10호, 제11호에 1	<u> 다른 자와 제</u>		
			<u> 9호에 따</u>	<u>른 마을회로</u> .			
제8조(농어업인	] 소득보전 등)<본문	생략>	제8조(농어업	인 소득보전 등)<현행	 과 같음>		
1.~7.<생 략		1.~7.<현행		·			
8.<신 설>		8. 농어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u>8.</u> <생 략>		<u>9.</u> <현행과	같음>				
[별표] 단체별	지원내용(제12조	[별표] 단체법	별 지원내용(제12조	관련)			
단체명	지원내용	담당부서	단체명	지5원내 <del>용</del>	담당부서		

	<u> </u>	
단체명	지원내 <del>용</del>	담당부서
농협중앙회남해군지 부 군내 농축협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u>&lt;신 설&gt;</u>
<신 설>	<신 설>	<u>&lt;신 설&gt;</u>
남하군 특산물 생산유통협 <b>의</b>	<생 략>	<생략>
< 하생략>	<이하 생략>	<이하생략>
		1

지5원내용	담당부서
<현행과 같음>	<현행과 <del>같음</del> >
축산. 낙당산업 경쟁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 축산 낙동기술 벤치마킹, 판매 홍보, 각종 행사 참가	축산정책팀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 양봉 기술 밴차마킹 판매홍보 각종 행사 참가	축산정책팀
<현행과 같음>	<현행구같음>
<현행과 같음>	<현화 같음>
	<한행과 같음>  축산, 낙동산업 경쟁력 제고 및 역량 경회를 위한 국내외 선진 축산낙동기술 벤치미킹, 판매 홍보, 각종 행사 참가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및 역량 경회를 위한 국내외 선진 양봉 기술 벤치미킹, 판매홍보 각종 행사 참가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18 - 657호

##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 어혼발전 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남해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로 개정에 따라 제명을 수정 정비하고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명칭 수정(안 제2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로 수정
  - 나.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안 제3조)
  - "제13호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조문 신설다. 상위법령 및 조례제명 수정(안 제7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 수정

####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6월 2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제출처

1) 주 소 :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906, 팩스 055-860-398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055-860-39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성명(명칭)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기년	[구아 1]]요	찬성여부		의	견	
시시 일	자치법규안 내용		반대		7	신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로 한다.

제3조 제13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귀농·귀촌 및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같은 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제7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의)( 「 <u>농어업·농어촌</u>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조(적용범의)(「 <u>농업·농촌 및 식품</u> 산업 기본법」제3조 및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제3조(예산의 지원)(본문 생략) 1.~12.(생 략) 13. <u>&lt;신 설&gt;</u> 14.<생 략>	제3조(예산의 지원)(현행과 같음) 1.~12.(현행과 같음) 13. <u>귀농귀촌 및 귀아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u> 14.<현행과 같음>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u>「보조금의 예</u> 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u>「보조금관리에</u>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u>조례</u>